

발행일 : 2022. 3. 1. (22차 개정)
고유번호 :

가격조사산정기준서

2022년 4월 ~ 6월
(2022년 2분기용)

본 기준서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협회 허락없이 불법복제·복사·배포하거나, 전산 등 제2차 저작
을 금지합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유의사항

1. 가격조사산정을 하려는 자동차진단평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인가한 본 협회의 정관과 규정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
 2. 가격조사산정을 하려는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 기준서에 의거하여 가격조사산정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3. 가격조사산정을 하려는 자동차진단평가사는 가격조사산정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본 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가격조사·산정서를 발행하거나 민원 또는 분쟁 발생시에는 본 협회에서 정하는 징계규정에 따라 자격이 정지·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 기준서는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가격조사·산정자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동차진단평가사에게 배포하는 자료임.

적 용 범 위

1. 본 가격조사·산정기준서는 승용차, 25인 이하의 승합차, 5톤 이하의 화물차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그 외 차량의 가격조사·산정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가격조사·산정자 징계에 관한 사항

1. 협회 정관 / 자격 검정 규정 승인 근거

- 국토부(정관)
자동차정책과-2076(2016.4.4.) 정관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
- 직업능력개발원(자격검정규정)
민간센터-3836(16.1.11) 공인 민간자격 변경승인 신청결과 통보

제30조 (자동차 진단평가사의 정보관리)

1. 협회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제2호에 따라 자동차가
가격조사·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 나. 최종학교명,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학력사항
 - 다. 자격의 종목분야 및 취득연도 등 취득한 자격에
대한 사항
 - 라. 자격의 취소·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
2. 협회는 제1항 중 다,라 호의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징계위원회)

1. 회장은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한 징계를 심
의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2. 징계 혐의사실을 조사·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사위원은 협회장이 지정한다.
3. 가격조사산정자에 대한 징계조사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가격조사산정서 허위 발행신고 접수시
 - 나. 가격조사산정관련 민원 또는 분쟁 발생시
 - 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협회장은 징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
회를 소집하고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5. 양정기준은 협회규정에 따른다.

가격조사·산정자 징계에 관한 사항

2.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31조에 따라 자동차진단평가사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업무를 수행한 자(이하 “가격조사·산정자”라 함)에 대한 합리적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양정기준) 협회장은 정관 제31조에 따라 가격조사·산정자를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징계사유	징계내용
1.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 손해를 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거짓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가격조사·산정을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다. 가격조사·산정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고 가격조사·산정을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1차 : 자격정지 30일 2차 : 자격정지 90일 3차 : 자격취소
2. 자격정지 기간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가격조사·산정업무를 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 ※ 자격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자로 처리함	1차 : 자격정지 2년 추가 2차 : 자격취소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가격조사·산정업무를 하게한 경우	자격정지 2년
4. 타 가격조사·산정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협회의 공신력에 위해를 가한 경우	1차 : 자격정지 30일 2차 : 자격정지 90일 3차 : 자격취소

목 차

I. 총 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4
제4조(가격조사 · 산정 절차)	4
제5조(가 · 감점점수 운용)	4
제6조(가격조사 · 산정기준서의 개정)	5
제7조(등급분류 및 등급계수)	5
제8조(사용년 계수)	14
제9조(잔가율표)	14
제10조(기준가격)	15
제11조(기준가격 산출 및 보정)	17
제12조(전년도 보정가격)	18

II. 자동차종합상태

제13조(주행거리 평가)	21
제14조(차대번호 표기 평가)	22
제15조(배출가스 검사 평가)	22
제16조(튜닝 평가)	23
제17조(특별이력 평가)	24
제18조(용도변경 평가)	24
제19조(색상 평가)	25
제20조(옵션 평가)	26

목 차

Ⅲ.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제21조(사고·수리이력 상태표시)	31
제22조(사고·수리이력 평가)	31

Ⅳ. 자동차 세부상태

제23조(주요장치 성능평가)	41
제24조(주요장치 성능감점계수 산출)	43

Ⅴ. 자동차 기타정보

제25조(수리필요 상태표시)	47
제26조(외장상태 평가)	47
제27조(광택 평가)	49
제28조(내장상태 평가)	49
제29조(룸 크리닝 평가)	50
제30조(휠 상태 평가)	50
제31조(타이어 상태 평가)	52
제32조(유리 상태 평가)	53
제33조(기본품목 평가)	54
제33조의2(가격조사·산정액 산출방법)	54

Ⅵ. 기타의견 작성 및 조사·산정가액 도출

제34조(기타의견 작성)	57
제35조(최종 가격조사·산정금액 도출)	57
제36조(조사·산정가액의 허용오차 범위)	57

- 별 첨

I. 총 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4
제4조(가격조사·산정 절차)	4
제5조(가·감점점수 운용)	4
제6조(가격조사·산정기준서의 개정)	5
제7조(등급분류 및 등급계수)	5
제8조(사용년 계수)	14
제9조(잔가율표)	14
제10조(기준가격)	15
제11조(기준가격 보정)	17
제12조(전년도 보정가격)	18

I.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라 (사)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을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격조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명시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이란 평가대상 자동차와 표준적인 점검과 정비를 완료한 상태(이하 “표준상태”라 함)의 자동차를 이 기준서의 점검 항목별로 비교, 경제적 가치 차이를 산출하여 평가대상 자동차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가격조사·산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가치감가 : 기능에 영향이 없고 통상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긁힘 또는 손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감가를 말한다.
 - 나. 수 리 : 부품을 교환할 필요는 없지만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있는 손상으로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손상을 말한다.
 - 다. 교 환 : 손상이 큰 것으로 부품을 수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손상이 커서 수리로서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말한다.
4. “기준가격”이란 표준상태의 자동차 가격으로서 보험개발원에서 매분기별 발표하는 기준가액을 말한다.

4.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5. “표준상태”의 자동차는 다음의 상태를 말한다.

- 가. 외관과 내부 상태는 손상이 없고 광택을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한다.
- 나. 엔진과 하체(구동장치)가 양호하고 각종 오일류가 정상이고 주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불법 구조(튜닝) 변경 등이 없이 신차 출고시의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 라. 주행거리가 표준 주행거리 (1년 기준, 2만 km) 이내의 것으로 한다.
- 마. 타이어 트레드 부 흡의 깊이가 50%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바. 외관과 주요 골격은 사고수리 이력 및 개조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 제2호의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자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라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기준서에 따라야 한다.

제4조(가격조사 · 산정 절차) 자동차의 가격조사 ·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자동차 기본정보 등 확인
2. 자동차의 종합상태 점검 및 가격산정
3.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점검 및 가격산정
4. 자동차 세부 상태 점검 및 가격산정
5. 자동차 기타 정보 점검 및 가격산정
6. 특기 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란 작성
7. 자동차 가격조사산정 결과 작성

제5조(가 · 감점 점수의 운용) 가 · 감점 점수는 차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가 · 감점 평균치를 점수화한 것으로서, 가 · 감점 1점은 1만 원으로 계상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한다.

제5조2(실비와 견적금액의 적용) 실비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실제 소요비용을 적용하고, 수리가 필요한 견적금액의 경우에는 견적금액의 90%를 적용한다.

5.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제5조3(산출방법) 산출식의 계산은 사칙연산에 따라 연속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한다.

제6조(가격조사 · 산정기준서의 개정) 가격조사 · 산정자 등은 이 기준서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협회는 제출된 개정의견을 가격산정 기준위원회의 심의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등급분류 및 등급계수) 자동차 세부 상태별 평가점수를 차량 등급별로 차등 적용하기 위해 배기량과 승차인원 등을 고려하여 차량 등급을 분류하고 분류된 등급에 계수를 설정 적용한다. 승용차, SUV, RV는 배기량을, 승합차는 승차인원을, 화물차는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설정 적용한다. 단, 전기, 수소 자동차(제4호)를 제외한 차종의 경우, 하이브리드 차종은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1. 승용형 자동차 등급분류

가. 등급분류 (배기량 기준)

차종	등급	배기량 (단위 : 1,000 cc)
승용	특C	3.0이상 ~
	특B	2.4이상 ~ 3.0미만
	특A	2.1이상 ~ 2.4미만
	I	1.7이상 ~ 2.1미만
	II	1.3이상 ~ 1.7미만
	III	1.1이상 ~ 1.3미만
	경	~ 1.1미만
적용대상	6인승 이하 세단형, 해치백, 웨건 등	

6.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나. 국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차종	등급	차명
승용	특C	EQ900(5.0), K9(5.0), G90L, 체어맨W(5.0)
	특B	G90, 에쿠스, EQ900, K9, 베리타스, 체어맨W, 베리타스
	특A	G80, 다이너스티, 아슬란, 그랜저, K7, K8, 임팔라, SM7, 오피러스, 알페온, 체어맨H
	I	i40, 쏘나타, 마르샤, G70, 로체, K5, 스타이어, 옵티마, 크레도스, 매그너스, 브로엄, 토스카, 프린스, 말리부, SM5, SM6
	II	i30, 벨로스터, 아반떼, 스텔라, 엘란트라, 포르테, K3, 세피아, 스펙트라, 쉐라토, 쏘울, 라세티프리미어, 크루즈, 르망, SM3
	III	엑센트, 베르나, 클릭, 엑셀, 포니, 아벨라, 프라이드, 칼로스, 젠트라, 아베오, 클리오
	경	모닝, 레이, 비스토,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다. 수입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차종	등급	차명
승용	특C	롤스로이스 팬텀, 고스트
	특B	BMW 7시리즈, 8시리즈, M8,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S클래스, AMG GT, 포르쉐 파나메라, 아우디 A8, S8L, 렉서스 LS, 폭스바겐 페이톤, 벤틀리 컨티넨탈 GT, 플라잉스피어,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특A	BMW 5시리즈, 6시리즈, 벤츠 CLS클래스, E클래스, 아우디 A6, A7, ES300h, 볼보 S90, 기블리, 재규어 XF, 캐딜락 CT5
	I	BMW 3시리즈, 4시리즈, 볼보 S60, 도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 아우디 A4, A5, S5, 폭스바겐 파사트GT, 아테온, 캐딜락 CT4, 포드 몬데오, 푸조 508, 벤츠 C-클래스
	II	BMW 1시리즈, 2시리즈, 벤츠 A클래스, CLA클래스, 아우디 A3, 푸조 308, 폭스바겐 제타, 골프,
	III	미니 해치백, 미니 컨버터블, 시트로엥 C3, 아우디 A1, 폭스바겐 폴로
	경	스마트 포투

7.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라. 기타

① 위 기준에 따라 해당 차량의 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차명별 등급을 적용한다.

2. SUV형 자동차 등급분류

가. 등급분류 (배기량 기준)

차종	등급	배기량 (단위 : 1,000 cc)
SUV	특C	3.0이상 ~
	특B	2.4이상 ~ 3.0미만
	특A	2.1이상 ~ 2.4미만
	I	1.7이상 ~ 2.1미만
	II	1.3이상 ~ 1.7미만
	III	~ 1.3미만
적용대상	8인승 이하 다목적형	

나. 국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차종	등급	차명
SUV	특C	
	특B	트레버스, 제네시스GV80, 렉스턴, 렉스턴스포츠, 모하비, 팰리세이드, 맥스크루즈, 베라크루즈, 콜로라도, 모하비, 테라칸,
	특A	제네시스 GV70, 쏘렌토, QM6, 쏘타페, 이퀴녹스, 갤로퍼, 블레이저, 액티언 스포츠, 윈스툼, 캡티바, 코란도 스포츠, 무쏘, 무쏘 스포츠, 카이런, 올란도
	I	스포티지, 투싼, 코란도, 코란도c, QM5, 액티언
	II	셀토스, 베뉴, XM3, 트레일블레이저, 티볼리, 코나, 트랙스, QM3, 스톨닉, 캡처, 니로
	III	캐스퍼

8.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다. 수입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차종	등급	차명
SUV	특C	BMW X7, 벤츠 GLS클래스, 마이바흐 GLS , 포드 익스페디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링컨 네비게이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벤틀리 벤테이가, 람보르기니 우르스, 톨스로이스 컬리넨
	특B	BMW X5, X6, 벤츠 GLE-클래스, 아우디 Q7, Q8, 폭스바겐 투아렉,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볼보 XC90, 포드 익스플로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마세라티 르반떼, 렉서스 RX, 캐딜락 XT6 포르쉐 카이엔
	특A	볼보 XC60, BMW X3, X4, GLC-클래스, 아우디 Q5, SQ5, 지프 랭글러, 체로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 디펜더 110, 푸조 5008, 링컨 노틸러스, 재규어 F-페이스, 렉서스 NX
	I	볼보 XC40, 폭스바겐 티구안, 벤츠 GLA-클래스, GLB-클래스, BMW X1, X2, 시트로엥 C5,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디스커버리 스포츠, 아우디 Q3, 지프 컴패스, 혼다 CR-V, 링컨 코세어, 캐딜락 XT4, 푸조 3008, 재규어 E-페이스
	II	미니 컨트리맨 , 폭스바겐 티룩, 지프 레니게이드, 아우디 Q2, 푸조 2008, 시트로엥 C3, C4, DS3 크로스백,
	III	

라. 기타

① 위 기준에 따라 해당 차량의 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차명별 등급을 적용한다.

9.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3. RV형 자동차 등급분류

가. 등급분류 (배기량 기준)

차종	등급	배기량 (단위 : 1,000 cc)
RV	특C	4.0이상 ~
	특B	2.8이상 ~ 4.0미만
	특A	2.1이상 ~ 2.8미만
	I	1.7이상 ~ 2.1미만
	II	~ 1.7미만
적용대상	15인승 이하 다목적형 (미니밴 승용, 승합형)	

나. 국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차종	등급	차명
RV	특C	
	특B	코란도 투리스모, 카니발하이리무진, 로디우스, 카니발, 그랜드 스타렉스, 스타리아
	특A	
	I	
	II	

다. 수입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차종	등급	차명
RV	특C	
	특B	도요타 시에나, 혼다 오딧세이
	특A	
	I	
	II	

라. 기타

① 위 기준에 따라 해당 차량의 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차명별 등급을 적용한다.

10.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4. 전기, 수소자동차 자동차 등급분류

가. 등급분류 (자동차등록증 기준)

차종	등급	차종(승용)	차종(SUV)
전기 수소	특C	대형	대형
	특B	준대형	중형
	특A	중형	준중형
	I	준중형	소형
	II	소형	-
	III	경형	-
	경	초소형	-
적용대상	자동차등록증을 기준하여 승용형, SUV형, RV형		

나. 국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차종	등급	차명(승용)	차명(SUV)
전기 수소	특C		
	특B		넥쏘
	특A		GV60, EV6, 아이오닉5,
	I	아이오닉 일렉트릭, 쏘울 EV, SM3 Z.E	니로 EV, 코나 알렉트릭, 볼트 EUV
	II	볼트 EV, 조에, 쏘울 EV,	
	III	레이 EV, 스파크 EV	
	경	SMART EV Z, CEVO-C, M1	

11.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다. 수입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차종	등급	차명(승용)	차명(SUV)
전기 수소	특C	벤츠 EQS,	GMC 허머 EV
	특B	테슬라 모델S, 포르쉐 타이칸	벤츠 EQC, 테슬라 모델Y, 재규어 I-페이스, 테슬라 모델X
	특A	테슬라 모델3	벤츠 EQA, 아우디 Q4 e-트론
	I		푸조 e-2008, DS3크로스백 E-텐스
	II	푸조 e-208	
	III		
	경		

라. 기타

① 위 기준에 따라 해당 차량의 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차명별 등급을 적용한다.

12.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5. 승합차의 등급분류

가. 등급분류 (승차정원 기준)

차종	등급	승차정원
승합	특C	16인승 이상 ~ 25인승 이하
	특A	13인승 이상 ~ 15인승 이하
	I	12인승 이하
	경	경승합, 경화물(벤), 경(특장)
적용대상	25인승 이하 버스형	

나. 국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차종	등급	차명
승합	특C	레스타, 마스터, 카운티, 쏘라티, 스프린터
	특A	봉고버스, 그레이스
	I	
	경	다마스

다. 수입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차종	등급	차명
승합	특C	
	특A	
	I	
	경	

라. 기타

① 위 기준에 따라 해당 차량의 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차명별 등급을 적용한다.

13.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6. 화물차의 등급분류

가. 등급분류 (최대적재량 기준)

차종	등급	최대적재량
화물	특C	4.0 t 이상 ~ 5.0 t 이하
	특B	1.5 t 이상 ~ 4.0 t 미만
	특A	1.0 t 초과 ~ 1.5 t 미만
	I	1 t
	경	1.0 t 미만
적용대상	5톤 이하 화물 운송형	

나. 국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차종	등급	차명
화물	특C	메가트럭4톤이상,
	특B	메가트럭, 마이티
	특A	봉고1.3톤이상,
	I	포터, 봉고3, 리베로
	경	라보

다. 수입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차종	등급	차명
화물	특C	
	특B	
	특A	
	I	
	경	

라. 기타

① 위 기준에 따라 해당 차량의 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차명별 등급을 적용한다.

14.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7. 등급계수 : 1항의 등급분류에 따른 등급별 계수는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한다.

등급 제조국	특C	특B	특A	I	II	III	경
국 산	2.2	1.8	1.5	1.4	1.2	1.0	0.8
수 입	2.7	2.5	2.0	1.7	1.4	1.2	1.0

제8조(사용년 계수) 차량의 사용연수에 따른 계수는 아래[표]와 같고, 사용연 수 산출은 연도만으로 계산한다.

(예) 최초등록일이 2014.12.15이고, 평가일이 2020.07.12.인 경우,

① 사용연수 : 2020년 - 2014년 = 6년

② 사용월수 : (6년 × 12개월) - 5개월 = 67개월

1. 국산차

사용년	당년~2년	3년	4년	5년~
계 수	1.0	0.9	0.8	0.7

2. 수입차

사용년	당년~2년	3~4년	5~6년	7년~
계 수	1.0	0.9	0.8	0.7

제9조(잔가율표)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기타 물 건 - 차량의 잔가율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승용, SUV, RV

사용년	당년 ~ 3년	4년	5년	6년	7년 ~
국산차	0.518	0.437	0.368	0.311	0.262
수입차	0.500	0.412	0.340	0.281	0.232

15.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2. 승합, 화물

사용년	당년 ~ 3년	4년	5년	6년	7년 ~
국산차	0.510	0.426	0.357	0.298	0.250
수입차	0.510	0.426	0.357	0.298	0.250

제10조(기준가격) 기준가격은 보험개발원에서 매 분기 발표하는 기준가액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또는 신차출시 시기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발표 시기가 다른 경우 또는 내용연수가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출 적용한다.

기준가격 산출식
$\text{최초 기준가액} \times \text{감가율 계수의 감가율}(\%)$

1. 최초 기준가액은 신차 출고 시 신차가격(부가세 포함)을 말한다.
2. 감가율 계수 : $11 + (\text{사용년} \times 12) + \text{평가월 수}$
3. 감가율은 제4호의 감가율표에서 감가율 계수에 상응하는 감가율을 적용한다.
4. 공정하고 정확한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을 위해 차량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세변동 요소 (인기도, 연료, 거래량, 신차 및 신모델 출시, 단종 등)를 반영하여 “가격조사산정위원회” 에서 기준가격을 보정할 수 있다.

16.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4. 감가율표 (단위 : %)

감가율 계수	1	2	3	4	5	6	7	8	9	10
감가율	100	98.96	97.92	96.88	95.85	94.81	93.77	92.74	91.7	90.66
감가율 계수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감가율	89.62	88.59	87.55	86.65	85.75	84.85	83.95	83.05	82.15	81.25
감가율 계수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감가율	80.36	79.46	78.56	77.66	76.76	75.97	75.18	74.4	73.61	72.82
감가율 계수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감가율	72.04	71.25	70.46	69.68	68.89	68.11	67.32	66.65	65.99	65.32
감가율 계수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감가율	64.66	63.99	63.33	62.66	62	61.33	60.67	60	59.34	58.75
감가율 계수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감가율	58.16	57.57	56.98	56.39	55.8	55.21	54.62	54.04	53.45	52.86
감가율 계수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감가율	52.27	51.74	51.21	50.68	50.16	49.63	49.1	48.57	48.05	47.52
감가율 계수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감가율	46.99	46.47	45.94	45.49	45.04	44.59	44.15	43.7	43.25	42.8
감가율 계수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감가율	42.36	41.91	41.46	41.01	40.57	40.16	39.75	39.35	38.94	38.53
감가율 계수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감가율	38.13	37.72	37.31	36.91	36.5	36.09	35.69	35.31	34.94	34.57
감가율 계수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감가율	34.2	33.82	33.45	33.08	32.71	32.33	31.96	31.59	31.22	30.9
감가율 계수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감가율	30.58	30.26	29.94	29.62	29.3	28.98	28.66	28.34	28.02	27.7
감가율 계수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감가율	27.38	27.08	26.78	26.48	26.19	25.89	25.59	25.29	25	24.7
감가율 계수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감가율	24.4	24.1	23.81	23.53	23.25	22.97	22.69	22.41	22.13	21.85
감가율 계수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감가율	21.57	21.29	21.01	20.74	20.46	20.22	19.99	19.75	19.52	19.29
감가율 계수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감가율	19.05	18.82	18.58	18.35	18.11	17.88	17.65	17.42	17.2	16.98
감가율 계수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감가율	16.76	16.53	16.31	16.09	15.87	15.64	15.42	15.2	14.98	14.76
감가율 계수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감가율	14.55	14.34	14.13	13.92	13.71	13.49	13.28	13.07	12.86	12.65

17.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제11조(기준가격 보정) 월별 보정이 필요하거나 차량 특성값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준가격을 보정하여 적용한다. 단, 월별 보정 및 특성값 보정이 없는 차량은 기준가격을 보정가격으로 한다.

1. 보정가격 산출식

보정가격 산출식
$\text{보정가격} = \text{기준가격} - \text{㉔월별 보정가격} - \text{㉕특성값 보정가격}$

2. ㉔월별 보정가격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발표되는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을 월별 기준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월별 감가율을 적용하여 월별 보정가격을 산출한다.

가. 월별 감가율(%)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월	3월	5월	6월	8월	9월	11월	12월
월별감가율	1	2	1	2	1	2	1	2

※ 매 분기 첫 번째 월은 감가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월별 보정가격 산출식

$\text{㉔월별 보정가격}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월별 감가율}$

3. ㉕특성값 보정가격 (특성값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격조사산정자가 평가차량을 점검하고 기준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신차할인 프로모션, 인기도 등의 특성값을 확인하여 기준가격에 반영하여 보정한다. 단 기준가격의 24%이내 보정 할 수 있다.

가. 인터넷 등 객관적 시세정보와 상이한 경우,

- ① 유사차량으로 객관적 시세정보
- ② 유사차량으로 경매, 감정평가 등 시세정보

18.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나. 프로모션 적용된 차량의 감가액 적용

① 프로모션 감가액 적용

구분	프로모션(인기도) 감가액
800만원 이상 ~	800만원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600만원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00만원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00만원
200만원 미만	100만원

② 특성값 보정가격 산출식

$$\text{⑤ 특성값 보정가격} = \text{프로모션(인기도) 감가액} \times \text{잔가율(\%)}$$

제12조(전년도 보정가격)

전년도 보정가격은 평가연도 보정가격의 13%를 더한 가격으로 한다.

■ II. 자동차종합상태

제13조(주행거리 평가)	21
제14조(차대번호 표기 평가)	22
제15조(배출가스 평가)	22
제16조(튜닝 평가)	23
제17조(특별이력 평가)	24
제18조(용도변경 평가)	24
제19조(색상 평가)	25
제20조(옵션 평가)	26

20.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II. 자동차종합상태

제13조(주행거리 평가) 평가 차량의 주행거리 평가는 실 주행거리와 표준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표준보다 적을 경우 가점하고, 많을 경우 감점하며,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행거리 산정 원칙

- 가. 주행거리는 주행거리 표시기에 표시된 수치를 실 주행거리로 한다.
- 나. 주행거리 표시기가 고장인 경우, 조작흔적이 있는 경우는 보정가격의 30%를 감점한다.
- 다. 주행거리 표시기가 교환되었을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4항 검사 유효기간란의 마지막 정기 검사일에 기록된 주행거리에 현재 주행거리계의 수치를 합하여 산정한다.
- 라. 주행거리 단위는 km를 사용하고, 마일(mile) 단위인 경우 km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1 mile \Rightarrow 1.6 km)

2. 표준 주행거리 산정 원칙

- 가. 표준 주행거리는 승용차의 경우 1년에 2만km를, 화물차인 경우 1년에 3만km를 적용한다.
- 나. 표준 주행거리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text{ 승용, SUV, RV의 표준 주행거리} = \text{사용월 수} \times 1.66 \times 1,000$$

$$(2) \text{ 화물차의 표준 주행거리} = \text{사용월 수} \times 2.5 \times 1,000$$

22.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3. 주행거리 가 · 감점 산출식

가. 승용, SUV, RV

$$\frac{(\text{전년도 보정가격} - \text{보정가격})}{20} \times \frac{(\text{표준주행거리} - \text{실주행거리})}{1000} \times \text{잔가율}$$

나. 화물차

$$\frac{(\text{전년도 보정가격} - \text{보정가격})}{30} \times \frac{(\text{표준주행거리} - \text{실주행거리})}{1000} \times \text{잔가율}$$

- (1) ‘전년도 보정가격’은 제12조(전년도 보정가격)를 말한다.
- (2) ‘잔가율’은 제9조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3) 주행거리 평가 가점은 보정가격의 15%(올림한 가격)를 초과할 수 없고, 감점은 보정가격의 30%(올림한 가격)를 초과할 수 없다.
(예) 보정가격이 1,031만원인 경우, 보정가격의 15%는 154.65이며, 올림하면 155이므로 주행거리 평가 가점은 155를 초과할 수 없음. 감점의 경우도 이와 같음.
- (4) 사고수리이력 B랭크 손상이 있는 경우는 가점하지 않는다.

제14조(차대번호 표기 평가) 자동차등록증의 차대번호와 평가 차량의 차대번호를 비교하여 동일성 확인과 부식, 훼손, 상이, 변조, 도말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계수를 아래와 같이 적용 평가한다.

항 목	불 량	감점 계수
차대번호	부식, 훼손(오손), 도말 ※ 재 타각이 가능한 경우	20

제15조(배출가스 평가) 평가차량의 배출가스검사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별표21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표준적인 정비비용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점 적용한다.

1. 감점 산출 공식

$$\text{감점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text{사용년 계수}$$

23.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2. 배출가스 검사 감점표

항 목	불 량	감점 계수
HC, CO	가솔린	60
매연	디젤	120

(HC, CO 2가지 중 1가지만 초과하여도 감점)

제16조(튜닝 평가) 평가차량의 구조장치 상태를 점검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구조장치가 변경된 경우 감점 적용하고, 구조장치 변경승인(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가점할 수 있다.

1. 불법 튜닝 감점 산출

$$\text{감점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text{사용년 계수}$$

2. 감점 계수표

구 분	감점 계수
장치	80
구조	120

※ 감점계수(등급계수)는 복원수리 실비비용을 적용 할 수있다.

3. 적법 튜닝 가점 산출

$$\text{튜닝 비용} \times \text{잔가율} \times \text{사용년 계수}$$

※ 잔가율과 사용년 계수는 튜닝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튜닝 비용 : 실비 적용(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실제 장착비용)

24.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제17조(특별이력 평가) 평가차량의 침수, 화재 등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항목별 기준에 의해 감점한다.

1. 감점 산출 공식

$$\text{보정가격} \times \text{감점률} \times \text{사용년 계수}$$

2. 손상이력 감점

구 분	감 점 률
침수 이력 (보험사고수리이력 조회)	40%
화재 이력 (보험사고수리이력 조회)	40%

3. 수리이력 감점

구 분	감 점 률
전손이력 (보험사고수리이력 조회)	10%
수리이력 (보험사고수리이력과 차량수리상태 상이)	7%

※ 수리이력 감가는 보험이력 조회 시 공임을 제외한 부품가격만 적용하되 국산차는 100만원,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 조회시 적용한다. 단, 사고수리이력 평가 항목 중 외관부위 2랭크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4. 특수사용이력 감점

특수사용이력	감 점 률
특수사용손상 (공사장 운용차량, 수산물 운송차량, 기타)	40%

제18조(용도변경 평가) 평가차량의 용도변경이력 중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항목별 기준에 의해 감점한다.

1. 감점산출 공식

$$\text{보정가격} \times \text{감점률} \times \text{사용년 계수}$$

25.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2. 감점률표

변경 이력	감점률
렌터카 이력	7%
영업용 이력	15%
관용 이력	7%
직수입 이력	15%

※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감점하지 않는다.

※ 관용 이력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색상 평가) 평가차량의 출고 시의 색상에 따라 기본색상 평가를 하고, 전체도색 및 색상변경 등의 이력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승합차, 화물차는 감점하지 않는다.

1. 기본색상 평가 (화물차, 승합차는 감점하지 않음)

구 분		감점
기본 색상 평가	① 무채색 계열	감점 없음
	② 유채색 계열	유채색 감가액 × 사용년 계수
색상 변경 평가	③ 전체 도색[제작사의 표준색]	보정가격 × 3% × 사용년 계수
	④ 색상 변경[출고 시와 다른 색상]	보정가격 × 6% × 사용년 계수
※ 색상변경 평가는 I 등급 이상 유채색의 경우 감가액의 1/2만 감점		

2. 유채색 감가액

제조국	등급	특C	특B	특A	I			경
					II	III		
국산차		170	150	130	100	-	-	-
수입차		240	220	200	170	-	-	-

26.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3. 색상 분류 기준

구분	세부 색상
무채색 계열	흰색, 검정색, 은색, 쥐색
유채색 계열	무채색 외의 색상 [빨강, 파랑, 주황색 등]

제20조(옵션 평가)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품목 옵션과 패키지 옵션으로 구분하여 가점 적용하며, 단품목 옵션과 패키지 옵션이 중복될 경우 패키지 옵션만 가점 적용한다. 다만, 옵션이 불량(고장, 분실 등)인 경우는 가점 후 감점을 적용한다.

1. 단품목 옵션

단품목 옵션은 차량 기준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추가 비용으로 장착한 1개 또는 여러 개의 단일 품목을 말한다.

가. 가점

- (1) 단품목 옵션은 내비게이션과 쉐루프만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 (2) 내비게이션과 쉐루프 옵션이 중복될 경우 쉐루프 옵션만 가점 적용한다.
- (3) 내비게이션은 경 등급부터 1 등급 차량까지만 가점을 적용하고, 특A, 특B, 특C 등급은 가점하지 않는다.

(4) 가점금액

구분/사용년	1년		2~3년		4~5년		6년~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내비게이션	60		50		40		30	
쉐루프	70	0	60	0	50	0	40	0
파노라마 쉐루프	80	0	70	0	60	0	50	0

나. 감점 : 옵션이 불량(고장, 분실 등)인 경우는 감점을 각각 적용한다.

감점 : 견적액 × 0.9

27.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2. 패키지 옵션(기타)

패키지 옵션은 차량 기준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안전장치, 편의장치 등을 자동차 제작사가 패키지(묶음) 형태로 판매하는 품목으로서, 추가 비용으로 장착한 품목을 말한다.

가. 가점

(1) 가점 산출 공식

$$\text{패키지옵션 가액} \times \text{감가율 계수의 감가율(\%)}$$

- ※ 감가율 계수 : 11 + (사용년 × 12) + 평가월
- ※ 감가율은 제10조 제4호의 감가율표에서 감가율 계수에 상응하는 감가율을 적용한다.
- ※ 패키지 옵션 중 안전장치와 편의장치가 중복 장착된 경우 패키지옵션 가액을 합산 적용한다.

(3) 패키지 옵션 구분표

안전 장치	에어백(커튼), 브레이크잠김방지(ABS), 미끄럼방지(TCS), 차체자세 제어장치(ESC), 타이어 공기압센서(TPMS),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전자제어 서스펜션(ECS), 주차감지센서(전방, 후방), 후측방 경보 시스템,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편의 장치	크루즈 컨트롤(일반, 어댑티브),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자동 에어컨, 스마트키, 무선도어 잠금장치, 레인센서, 오토 라이트, 커튼/블라인드(뒷좌석, 후방), 내비게이션, AV 모니터블루투스, CD 플레이어, USB 단자, AUX 단자, 시트가죽시트, 전동시트(운전석, 동승석), 전동시트(뒷좌석), 열선시트(앞좌석, 뒷좌석), 메모리 시트(운전석, 동승석), 통풍시트(운전석, 동승석), 통풍시트(뒷좌석)마사지시트

나. 감점 : 옵션이 불량(고장, 분실 등)인 경우는 감점을 각각 적용한다.

$$\text{감점} : \text{전적액} \times 0.9$$

28.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 III.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제21조(사고 · 수리이력 상태표시)	31
제22조(사고 · 수리이력 평가 및 랭크별 적용계수)	31

30.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Ⅲ.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제21조(사고·수리이력 상태표시) 평가자동차의 사고, 교환, 수리 등 수리이력의 상태표시는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교환이나 용접 또는 수리 등 수리이력의 흔적이 있는 해당부위에 상태표시 부호를 그림 내부에 표기한다.

1. 사고·수리이력 상태표시 부호

- 가. 교환 : X
- 나. 용접 : W

제22조(사고·수리이력 평가) 사고차량의 경우 수리가 완료되더라도 상품가치의 하락이 예상되므로 외판(1랭크, 2랭크)과 주요골격(A랭크, B랭크, C랭크)의 수리에 대하여 감가를 적용하며 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고수리이력 감가액 산출공식

$$\frac{\sqrt{\text{보정가격} \times \text{사고수리이력감가계수(합)}}}{4.8} \times \text{랭크별 적용계수}$$

- 가. 보정가격 : 제11조의 보정가격을 적용한다.
- 나. 사고수리이력감가계수(합) : 제5호의 사고수리이력 감가계수로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사고수리이력이 2곳 이상인 경우는 사고수리이력감가계수를 합한다.
 - (2) 교환수리(X)는 부위별 사고수리이력 감가계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판금·용접수리(W)는 부위별 사고수리이력 감가계수의 50%를 적용한다.
 - (3) 1랭크 부위 중 1곳만 교환수리(X)이고 다른 부위의 사고수리이력이 없는 경우는 사고수리이력 감가계수의 50%를 적용한다.
- 다. 랭크별 적용계수 : 제4호의 랭크별 적용계수를 적용한다. 단, 사고수리이력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해당 랭크 중 높은 랭크의 계수를 적용한다.
- 라. 차대가 프레임 방식 중 (cab)ASSY교환 차량은 아래와 같이 감점 적용한다.

$$\text{보정가격} \times \text{감점률(10\%)} \times \text{사용년 계수}$$

32.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2. 사고수리 이력 판단기준

가. 교환 (X)

- 볼트로 체결된 부품은 볼트가 전부 풀린 흔적과 색차이가 있는 경우
- 스폿용접으로 체결된 부위는 제작시 스폿용접 흔적과 비교시 상이한 경우

나. 판금 및 용접(W)

- 부품 교환 없이 판금 및 용접수리를 한 경우

3. 사고이력에 따른 랭크 분류

랭크분류	적용 부위	평 가 기 준
1랭크	1. 후드	- 교환여부(X) - 볼트가 전부 풀렸거나, 해당부품 색 차이 여부(X) - 판금, 용접수리 여부(W)
	2. 프런트 펜더	
	3. 도어	
	4. 트렁크 리드	
	5. 리디에이터 서포트볼트체결	
2랭크	6. 쿼터 패널(리어펜더)	- 교환여부(X) - 용접수리 여부(W) - 해당 부품이 구겨진 흔적이나 망치로 핀 자국이 있는 경우(W)
	7. 루프 패널	
	8. 사이드 실 패널	
A랭크	9. 프런트 패널	- 교환여부 (X) - 용접수리 여부(W) - 해당 부품이 구겨진 흔적이나 망치로 핀 자국이 있는 경우(W)
	10. 크로스 멤버(용접부품)	
	11. 인사이드 패널	
	17. 트렁크 플로어 패널	
B랭크	12. 사이드 멤버	- 교환여부 (X) - 용접수리 여부(W) - 해당 부품이 구겨진 흔적이나 망치로 핀 자국이 있는 경우(W)
	13. 휠 하우스	
	14. 필러 패널	
	19. 패키지 트레이	
C랭크	15. 대쉬 패널	- 교환여부 (X) - 용접수리 여부(W) - 해당 부품이 구겨진 흔적이나 망치로 핀 자국이 있는 경우(W)
	16. 플로어 패널	

33.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4. 랭크별 적용계수

(1) 승용형, SUV형, RV형

랭크 제조국	1	2	A	B	C
국산차	1.0	1.4	1.6	1.8	2.0
수입차	1.0	1.4	1.6	1.8	2.0

(2) 승합 · 화물

랭크 제조국	1	2	A	B	C
국산차	0.8	0.9	1	1.4	1.6
수입차	0.8	0.9	1	1.4	1.6

34.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5. 사고수리이력 감가계수

자동차의 손상정도에 따른 외판과 골격부위의 수리정도를 부품가격, 수리공임, 도장공임 등을 참조하여 손상성, 수리성 및 보험개발원 사고수리견적시스템 AOS (Areccom on-line system) 수리비, 지역 평균 공임 등을 참조하여 산출한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가. 승 용

랭크	차량등급 적용부위	특C		특B		특A		I		II		III		경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1	후드	120	240	108	216	100	200	80	160	64	128	52	104	40	80
	프런트펜더	60	120	54	108	50	100	40	80	32	64	26	52	20	40
	도어[Fr]	90	180	81	162	75	150	60	120	48	96	39	78	30	60
	도어[Rr]	81	162	73	146	68	135	54	108	43	87	36	71	27	54
	트렁크리드	75	150	68	135	63	125	50	100	40	80	33	65	25	50
	라디에이터 써포트	45	90	41	81	38	75	30	60	24	48	20	39	15	30
2	쿼터패널 [리어펜더]	156	312	140	281	130	260	104	208	83	167	68	136	52	104
	루프패널	165	330	149	297	138	275	110	220	88	176	72	143	55	110
	사이드실패널	96	192	86	173	80	160	64	128	51	103	42	84	32	64
A	프런트패널	144	288	130	260	120	240	96	192	77	154	63	125	48	96
	크로스멤버 [용접부품]	75	150	68	135	63	125	50	100	40	80	33	65	25	50
	인사이드패널	105	210	95	189	88	175	70	140	56	112	46	91	35	70
	트렁크플로어	168	336	151	303	140	280	112	224	90	180	73	146	56	112
	리어패널	81	162	73	146	68	135	54	108	43	87	36	71	27	54
B	사이드멤버[Fr]	150	300	135	270	125	250	100	200	80	160	65	130	50	100
	사이드멤버[Rr]	126	252	113	227	105	210	84	168	67	135	55	110	42	84
	휠 하우스[Fr]	156	312	140	281	130	260	104	208	83	167	68	136	52	104
	휠 하우스[Rr]	129	258	116	233	108	215	86	172	69	138	56	112	43	86
	A 필러패널	132	264	119	238	110	220	88	176	70	141	58	115	44	88
	B 필러패널	126	252	113	227	105	210	84	168	67	135	55	110	42	84
	C 필러패널	120	240	108	216	100	200	80	160	64	128	52	104	40	80
	패키지트레이	90	180	81	162	75	150	60	120	48	96	39	78	30	60
C	대쉬 패널	150	300	135	270	125	250	100	200	80	160	65	130	50	100
	플로어 패널	132	264	119	238	110	220	88	176	70	141	58	115	44	88

35.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나. SUV

랭크	차량등급 적용부위	특C		특B		특A		I		II		III		경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1	후드	130	260	118	236	110	220	74	266	66	234	58	202	50	100
	프런트펜더	70	140	64	128	60	120	54	186	48	162	43	142	37	74
	도어[Fr]	100	200	91	182	85	170	71	254	64	226	56	194	48	96
	도어[Rr]	91	182	83	166	78	155	70	250	62	218	55	190	47	94
	트렁크리드	85	170	78	155	73	145	64	226	57	198	51	174	44	88
	라디에이터 써포트	55	110	51	101	48	95	37	118	34	106	30	90	27	54
2	쿼터패널 [리어펜더]	166	332	150	301	140	280	93	342	83	302	72	258	62	124
	루프패널	175	350	159	317	148	295	98	362	87	318	76	274	65	130
	사이드실패널	106	212	96	193	90	180	62	218	55	190	49	166	42	84
A	프런트패널	154	308	140	280	130	260	86	314	77	278	67	238	58	116
	크로스멤버 [용접부품]	85	170	78	155	73	145	50	170	45	150	40	130	35	70
	인사이드패널	115	230	105	209	98	195	66	234	59	206	52	178	45	90
	트렁크플로어	178	356	161	323	150	300	99	366	88	322	77	278	66	132
	리어패널	91	182	83	166	78	155	53	182	48	162	42	138	37	74
B	사이드멤버[Fr]	160	320	145	290	135	270	90	330	80	290	70	250	60	120
	사이드멤버[Rr]	136	272	123	247	115	230	78	282	69	246	61	214	52	104
	휠 하우스[Fr]	166	332	150	301	140	280	94	346	83	302	73	262	62	124
	휠 하우스[Rr]	139	278	126	253	118	235	79	286	71	254	62	218	53	106
	A 필러패널	142	284	129	258	120	240	81	294	72	258	63	222	54	108
	B 필러패널	136	272	123	247	115	230	78	282	69	246	61	214	52	104
	C 필러패널	130	260	118	236	110	220	74	266	66	234	58	202	50	100
	패키지트레이	98	362	94	346	90	330	81	294	72	258	63	222	54	108
	대쉬 패널	160	320	145	290	135	270	90	330	80	290	70	250	60	120
C	플로어 패널	142	284	129	258	120	240	81	294	72	258	63	222	54	108

36.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다. RV

랭크	차량등급 적용부위	특C		특B		특A		I		II		III		경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1	후드	125	250	113	226	105	210	85	170	69	138	57	114	45	90
	프런트패널	65	130	59	118	55	110	45	90	37	74	31	62	25	50
	도어[Fr]	95	190	86	172	80	160	65	130	53	106	44	88	35	70
	도어[Rr]	86	172	78	156	73	145	59	118	49	97	41	81	32	64
	트렁크리드	80	160	73	145	68	135	55	110	45	90	38	75	30	60
	라디에이터 써포트	50	100	46	91	43	85	35	70	29	58	25	49	20	40
2	쿼터패널 [리어펜더]	161	322	146	291	135	270	109	218	89	177	73	136	57	114
	루프패널	170	340	154	307	143	285	115	230	93	186	77	146	60	120
	사이드실패널	101	202	92	183	85	170	69	138	57	113	47	94	37	74
A	프런트패널	149	298	135	270	125	250	101	202	82	164	68	135	53	106
	크로스멤버 [용접부품]	80	160	73	145	68	135	55	110	45	90	38	75	30	60
	인사이드패널	110	220	100	199	93	185	75	150	61	122	51	101	40	80
	트렁크플로어	173	346	157	313	145	290	117	234	95	190	78	156	61	122
	리어패널	86	172	78	156	73	145	59	118	49	97	41	81	32	64
B	사이드멤버[Fr]	155	310	140	280	130	260	105	210	85	170	70	140	55	110
	사이드멤버[Rr]	131	262	119	237	110	220	89	178	73	145	60	120	47	94
	휠 하우스[Fr]	161	322	146	291	135	270	109	218	89	177	73	146	57	114
	휠 하우스[Rr]	134	268	122	243	113	225	91	182	74	148	61	122	48	96
	A 필러패널	137	274	124	248	115	230	93	186	76	151	63	125	49	98
	B 필러패널	131	262	119	237	110	220	89	178	73	145	60	120	47	94
	C 필러패널	125	250	113	226	105	210	85	170	69	138	57	114	45	90
패키지트레이	155	310	140	280	130	260	105	210	85	170	70	140	55	110	
C	대쉬 패널	137	274	124	248	115	230	93	186	76	151	63	125	49	98
	플로어 패널	103	367	99	351	95	335	86	299	77	263	68	227	59	191

37.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라. 승합

랭크	차량등급 적용부위	특B		특A	
		국산	수입	국산	수입
1	후드	85	170	69	138
	프런트펜더	45	90	37	74
	도어[Fr]	65	130	53	106
	도어[Rr]	59	118	49	97
	트렁크리드	55	110	45	90
	라디에이터써포트[볼트체결]				
2	쿼터패널[리어펜더]	109	218	89	177
	루프패널	115	230	93	186
	사이드실패널	69	138	57	113
A	프런트패널	101	202	82	164
	크로스멤버	55	110	45	90
	인사이드패널	75	150	61	122
	트렁크플로어	117	234	95	190
	리어패널	59	118	49	97
B	사이드멤버[Fr]	105	210	85	170
	사이드멤버[Rr]	89	178	73	145
	휠 하우스[Fr]	109	218	89	177
	휠 하우스[Rr]	91	182	74	148
	A 필러패널	93	186	76	151
	B 필러패널	89	178	73	145
	C 필러패널	85	170	69	138
C	대쉬 패널	93	186	76	151
	플로어 패널	86	299	77	263

38.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마. 화물

랭크	차량등급 적용부위	국산					수입				
		특C	특B	특A	I	경	특C	특B	특A	I	경
1	후드	37	34	30	25	23					
	프런트펜더	33	25	21	16	13					
	도어[Fr]	44	41	37	32	29					
	도어[Rr]	43	41	37	32	29					
	트렁크리드	-	-	-	-	-					
	라디에이터썬포트 [볼트체결]	-	-	-	-	-					
2	쿼터패널[리어펜더]	57	54	50	45	42					
	루프패널	80	77	73	68	65					
	사이드실패널	27	24	20	15	12					
A	프런트패널	50	47	43	38	35					
	크로스멤버	23	20	16	11	8					
	인사이드패널	34	31	27	22	19					
	트렁크플로어	-	-	-	-	-					
	리어패널	59	54	50	45	42					
B	사이드멤버[Fr]	67	64	60	55	52					
	사이드멤버[Rr]	-	-	-	-	-					
	휠 하우스[Fr]	42	39	35	32	29					
	휠 하우스[Rr]	-	-	-	-	-					
	A 필러패널	50	47	43	38	35					
	B 필러패널	59	56	52	47	39					
	C 필러패널	62	59	55	50	47					
	대쉬 패널	48	45	41	36	33					
C	플로어 패널	67	64	60	55	52					

■ IV. 자동차 세부상태

제23조(주요장치 성능평가)	41
제24조(주요장치 성능감점계수 산출)	43

40.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Ⅳ. 자동차 세부상태

제23조(주요장치 성능평가) 자동차 세부상태란의 주요장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상태별 감점계수표에 따라 평가한다.

1. 주요장치 상태별 구분 표시

가. 양호 : 차량상태 점검결과 양호한 상태로 감점하지 않는다

나. 보통 : 차량상태 점검결과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은 가치감기를 적용한다.
(미세누수(유) 등) 단, 사용년 8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15만km 이상 차량은 감점하지 않는다

다. 불량 : 차량상태 점검결과 부품 교환 등 수리가 필요한 상태(정비요, 과다, 부족 등)

2. 주요장치별 감가액 산출 공식

$$\text{주요장치 평가항목별 감점계수} \times \text{사용년 계수}$$

가. 주요장치 항목/해당부품별 감점계수 : 제3호의 주요장치 항목/해당부품별 감점계수

나. 사용년 계수 : 제8조의 사용년 계수를 적용

42.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3. 주요장치 성능 감점 계수표

주요장치	항목/해당부품		보통		특C/특B		특A		불량							
			공통						1		2		3		경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자기진단	원동기		-	-	40	120	40	120	30	90	25	75	25	75	25	75
	변속기		-	-	60	180	60	180	50	150	50	150	50	150	40	120
원동기	엔진오일	로커암커버 누유	5	20	40	120	30	90	20	60	20	60	20	60	20	60
		헤드가스켓 엔진오일누유	10	30	80	240	80	240	60	180	50	150	40	120	40	120
		오일팬 엔진오일누유	5	20	30	90	30	90	20	60	20	60	20	60	20	60
		엔진오일 유량	-	-	40	120	40	120	30	90	30	90	30	90	30	90
	냉각수	실린더 헤드 / 가스켓냉각수누수	10	30	80	240	80	240	60	180	60	180	50	150	50	150
		워터펌프 냉각수 누수	10	30	60	180	50	150	40	120	40	120	40	120	35	105
		라디에이터 냉각수 누수	-	-	60	180	50	150	40	120	40	120	40	120	35	105
		냉각수 수량	-	-	50	150	40	120	30	90	30	90	30	90	30	90
	고압펌프(디젤)		-	-	120	360	120	360	120	360	120	360	120	360	-	-
	작동상태(공회전)		-	-	300	900	200	600	150	450	120	360	120	360	120	360
변속기	변속기 오일 상태	자동변속기 오일 누유	10	30	50	150	40	120	30	90	30	90	30	90	30	90
		수동변속기 오일 누유	10	30	50	150	40	120	30	90	30	90	30	90	30	90
		자동변속기 오일 유량	-	-	30	90	25	75	20	60	20	60	20	60	20	60
		수동변속기 오일 유량	-	-	30	90	25	75	20	60	20	60	20	60	20	60
	작동 상태	자동변속기	-	-	200	600	150	450	120	360	120	360	110	330	100	300
		수동변속기 (기어변속)	-	-	200	600	150	450	120	360	120	360	110	330	100	300
동력전달장치	작동 상태	클러치어셈블리	-	-	50	150	40	120	40	120	40	120	40	120	30	90
		등속조인트	-	-	30	90	25	75	20	60	20	60	20	60	20	60
		추진축 및 베어링	-	-	40	120	35	105	30	90	30	90	30	90	30	90
		디퍼런셜기어	-	-	50	150	50	150	50	150	50	150	50	150	50	150
조향장치	조향장치 오일상태	스티어링기어 오일누유	10	30	120	360	120	360	120	360	100	300	100	300	90	270
		스티어링기어(mdps포함)	-	-	120	360	120	360	120	360	100	300	100	300	90	270
	작동 상태	스티어링 펌프	-	-	50	150	40	120	35	105	30	90	30	90	25	75
		타이로드엔드및볼조인트	-	-	40	120	30	90	20	60	20	60	20	60	20	60
		스티어링조인트	-	-	50	150	40	120	35	105	30	90	30	90	25	75
		파워고압호스	-	-	40	120	30	90	20	60	20	60	20	60	20	60
제동장치	작동 상태	마스터 실린더오일누유	-	-	40	120	40	120	40	120	35	105	30	90	30	90
		브레이크오일누유	-	-	30	90	30	90	30	90	30	90	25	75	20	60
		배력장치 상태	-	-	60	180	60	180	60	180	50	150	40	120	35	105
전기장치	작동 상태	발전기	-	-	30	90	30	90	30	90	25	75	25	75	25	75
		사동 모터	-	-	30	90	30	90	30	90	25	75	25	75	25	75
		와이퍼 모터	-	-	20	60	20	60	20	60	20	60	20	60	20	60
		송풍 모터	-	-	40	120	40	120	40	120	35	105	35	105	35	105
		라디에이터 팬 모터	-	-	30	90	30	90	30	90	30	90	30	90	30	90
		윈도우 모터	-	-	20	60	20	60	20	60	20	60	20	60	20	60
고전원 전기장치	작동 상태	충전구 절연상태	-	-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구동축전지격리상태	-	-	300	500	300	500	300	500	300	500	300	500	300	500
		고전원전기배선 상태 (접속단자, 피복, 보호기구)	-	-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연료장치	연료누출		-	-	160	480	120	360	100	300	80	240	80	240	60	180

43.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제24조(주요장치 성능 감점계수 산출) 주요장치별 상태에 따른 가격조사 · 산정액 산출은 주요장치별로 각각 감점한다.

44.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 V. 자동차 기타정보

제25조(수리필요 상태표시)	47
제26조(외장상태 평가)	47
제27조(광택 평가)	49
제28조(내장상태 평가)	49
제29조(룸 크리닝 평가)	50
제30조(휠 상태 평가)	50
제31조(타이어 상태 평가)	52
제32조(유리 상태 평가)	53
제33조(기본품목 평가)	54
제33조의2(가격조사·산정액 산출법)	54

46.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V. 자동차 기타정보

제25(수리필요 상태표시) 평가차량의 외장, 휠, 타이어, 유리 상태를 표준상태의 차량과 비교하여 수리필요 부위의 외부에 복합부호와 감점계수로 표기한다. 단 내장, 광택, 립크리닝, 비상용타이어의 상태는 감점계수만 해당란에 표기한다.

1. 외관, 주요골격 평가 시 상태표시 부호(평가부호)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기호	적용기준
A (abrasion)	기능에 영향이 없고, 통상 수리에 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손상 또는 결점에 대해서 적용한다.
U (unevenness)	외관 패널, 주요골격의 찌그러짐, 충격 상태로 판금, 보수도장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C (corrosion)	수분 등으로 인하여 금속 고유의 형질이 변형된 상태로 판금 및 도장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T (tear)	깨짐, 균열, 손상, 부식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26(외장상태 평가) 평가차량의 외관, 주요골격 등의 상태를 표준상태의 차량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1. 외장상태평가 감가액 산출공식

$$\begin{aligned}
 A, U, C &: \text{감점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text{사용년 계수} \\
 T &: \text{감점계수} \times \text{사용년 계수}
 \end{aligned}$$

2. 적용부위별 평가기준 및 감점계수

가. 외관 [1랭크, 2랭크]

48.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평가기준	평가	감점계수	
		국산	수입
① 신용카드(5cm × 10cm) 크기 정도 이내의 손상 상태 ② 동전(지름 5cm) 크기 정도 이내의 요철이나 부식된 상태 ※ 외판 부위에 3곳 이상 발생 시 수리(U)로 평가한다.	A	5	10
① 신용카드(5cm × 10cm) 크기 정도 이상의 손상 상태 ② 동전(지름 3cm) 크기 정도 이상의 요철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상태	U	10	20
동전(지름 5cm) 크기 정도 이상의 외판부식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상태	C	10	20
외판부위에 A4(21cm × 30cm) 크기 정도 이상의 손상, 부식, 찌그러짐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T	제22조5호의 감가계수 적용	

나. 주요 골격 상태 평가 [A랭크, B랭크, C랭크]

평가기준	평가	감점계수	
		국산	수입
신용카드(5cm×10cm) 크기 이내의 하체 부식, 전체적으로 초기의 부식 상태로 언더코팅으로 부식 방지 가능한 상태 ※ 주요골격 1개 부위에 3곳 이상인 경우 교환(T)으로 평가한다.	C	15	30
신용카드(5cm × 10cm) 크기 정도 이상의 하체 부식[구멍·박리]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T	제22조 5호의 감가계수 적용	
찌그러짐[충격]	U	10	20

다. 기타

1) 범퍼

평가기준	평가	감점계수	
		국산	수입
신용카드(5cm × 10cm) 크기 정도 이내의 상처나, 동전(지름 5cm) 크기 정도 이내의 판금이나 외판부식 상태	A	5	10
신용카드(5cm × 10cm) 크기 정도 이상의 상처나 찌그러짐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상태	U	10	20
A4(21cm × 30cm) 크기 정도 이상의 상처, 부식, 찌그러짐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T	30	210

2) 사이드미러

평가기준	평가	감점계수	
		국산	수입
가벼운 마찰흔집, 변색 등 원상복구가 가능한 상태	A	5	10
균열, 변형, 디자인, 규격 등 결함이 있는 경우	T	10	100

49.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3) 헤드램프

평가기준	평가	감점계수	
		국산	수입
가벼운 마찰흡집, 변색, 그을음 등 원상복구가 가능한 상태	A	10	20
균열, 변형, 디자인, 규격 등 결함이 있는 경우	T	15	150

4) 리어 콤비네이션램프

평가기준	평가	감점계수	
		국산	수입
가벼운 마찰흡집 등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A	5	10
균열, 변형, 디자인, 규격 등 결함이 있는 경우	T	10	100

제27조(광택 평가) 평가차량의 상태를 표준상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감점평가한다.

1. 감점 산출 공식

$$\text{감점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text{사용년 계수}$$

2. 감점 계수표

평가기준	감점계수	
	국산	수입
변·퇴색이 없고 터치업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손톱으로 긁어 걸리지 않을 정도의 스쳐 생긴 손상 또는 타르의 부착, 물때의 오염이 있는 경우 평가 차량 단위로 감점한다.	10	20

제28조(내장상태 평가) 평가차량의 상태를 표준상태와 비교하여 적용부품별로 깨짐, 균열, 손상, 소실 등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감점평가한다.

1. 감점 산출 공식

$$\text{감점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text{사용년 계수}$$

50.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2. 감점계수표

주요내장부품	감점계수	
	국산	수입
블랑	50	100

대시보드, 씨트, 바닥내부, 천장내부, 도어내부 교환 필요

제29조(룸 크리닝 평가) 평가차량의 상태를 표준상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감점평가 한다.

1. 감점 산출 공식

$$\text{감점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text{사용년 계수}$$

2. 감점계수표

평가기준	감점계수	
	국산	수입
수지제 부분의 가벼운 상처, 실, 테이프 등의 흔적이 있거나, 담배, 애완전 등에 의한 냄새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차량 단위로 감점한다.	15	30

제30조(휠 상태평가) 평가 차량의 휠의 상태가 교환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감점 산출 공식

- ① 가치감가 : 감점계수 × 사용년 계수
- ② 교환 : 감점계수

51.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2. 평가 기준

평가기준	평가
① 가벼운 마찰흔집 등 통상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상태의 경우	가치감가
① 부식 등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 ② 균열, 변형 등 결함이 있는 경우	교환

3. 차종별 감점계수

가. 승용

상태 월 구분(등급)	A		T	
	국산	수입	국산	수입
특A, 특B, 특C	22	30	26	60
I, II	18	25	22	50
III, 경	14	20	18	40

나. SUV / RV

상태 월 구분(등급)	A		T	
	국산	수입	국산	수입
특A, 특B, 특C	24	30	30	80
I, II	20	25	26	60
III, 경	16	20	22	50

다. 화물차/승합

상태 월 구분(등급)	A		T	
	국산	수입	국산	수입
특A, 특B, 특C	-	미적용	24	미적용
I	-		20	
II	-		16	
III, 경	-		12	

52.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제31조(타이어 상태평가) 평가차량의 타이어는 다음과 같이 감점 평가한다.

1. 감점 산출 공식

① 가치감가 : 감점계수 × 사용년 계수 ② 교환 : 감점계수

2. 평가 기준

평가기준	평가
① 트레이드 남은 홈 깊이가 5mm(50% 정도) 이하,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상태	가치감가
② 트레이드 남은 홈 깊이가 1.6mm이하의 상태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 ※ 균열, 측면 마모, 토우 마모 등 편 마모인 것은 남은 홈에 관계 없이 1.6mm미만의 감점을 한다.	교환

3. 차종별 감점계수

가. 승용형

타이어 구분 (등급)	상태	가치감가		교환			
		남은 홈 [5mm 이하]		편마모 / 남은 홈 [1.6mm 이하]		비상용 결품 (스페어, 템퍼러리, SST)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특A, 특B, 특C		25	50	30	60	15	30
I . II		20	40	25	50	13	25
III. 경		15	30	20	40	10	20

나. SUV형 · RV형

타이어 구분 (등급)	상태	가치감가		교환			
		남은 홈 [5mm 이하]		편마모 / 남은 홈 [1.6mm 이하]		비상용 결품 (스페어, 템퍼러리, SST)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특A, 특B, 특C		35	70	40	80	20	40
I . II		25	50	30	60	15	30
III. 경		20	40	25	50	13	25

53.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다. 화물형 · 승합형

타이어 구분 (등급)	상태	가치감가		교환		비상용 결품 (스페어, 템퍼러리, SST)
		남은 홈 [5mm 이하]		편마모 / 남은 홈 [1.6mm 이하]		
		국산	수입	국산	수입	
특A, 특B, 특C		35		40		20
I		25	미적용	30	미적용	15
II		20		25		13
III. 경		15		20		10

제32조(유리 평가) 평가차량의 상태를 표준상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감점 산출 공식

① 가치감가 : 감점계수 × 사용년 계수 ② 교환 : 감점계수

2. 감점기준 및 계수

평가기준	평가	감점계수	
		국산	수입
① 가벼운 마찰흔집 등 상 거래상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상태 [별 모양 1곳]	가치감가	15	100
② 균열, 변형 등 결함이 있는 경우	교환	30	200

54.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제33조(기본품목 평가) 사용설명서, 공구, 잭세트, 삼각대 등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점 적용한다.

기본품목	감점계수	
	국산	수입
사용설명서	5	10
안전삼각대	3	5
잭세트	5	10
공구(스패너)	3	5

제33조의2(가격조사 · 산정액 산출방법)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각각 산출된 가격조사산정금액을 합산하여 가격조사 · 산정액란에 기록한다.

■ VI. 기타의견 작성 및 조사산정 가격도출

제34조(기타의견 작성)	57
제35조(최종 가격조사·산정금액 도출)	57
제36조(조사·산정가격의 허용오차 범위)	57

56.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Ⅵ. 기타의견 작성 및 조사산정가격

제34조 (기타의견 작성) 상기 평가내용 중 당해 차량을 구입후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예 : 특정부분 수리 또는 교환 등) 등을 기재한다.

제35조 (최종 가격조사 · 산정 금액 산출) 가격조사 · 산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보정가격에서 가감금액(자동차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자동차세 부상태, 자동차 기타정보)을 합산하여 최종 가격조사산정 금액을 산출한다.

제36조 (조사 · 산정가격의 허용오차 범위) 조사산정가격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조사산정가격의 $\pm 5\%$ 이하로 한다.

58.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별첨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 점검기록부(가격조사 산정서)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및 가격조사산정 체크리스트

60.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61.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별첨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21. 1. 19.>

(1/5쪽)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선택)			
제 호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기본정보 (가격산정 기준가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① 차명	(세부모델 :)		② 자동차등록번호
③ 연식	④ 검사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최초등록일	⑦ 변속기 종류		[]자동 []수동 []세미오토 []무단변속기 []기타()
⑥ 차대번호			
⑧ 사용연료 []가솔린 []디젤 []LPG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 []기타			
⑨ 원동기형식	⑩ 보증유형	[]자가보증 []보험사보증 보험사[]	가격산정 기준가격 만원
자동차 종합상태 (색상, 주요옵션,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⑪ 사용이력	상 태	항목 / 해당부품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양호 []불량	현재 주행거리 []	만원
	[]많음 []보통 []적음		만원
차대번호 표기	[]양호 []부식 []훼손(오손) []상이 []변조(변타) []도말		만원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 ppm, %	만원
튜닝	[]없음 []있음 []적법 []불법 []구조 []장치		만원
특별이력	[]없음 []있음	[]침수 []화재	만원
용도변경	[]없음 []있음	[]렌트 []영업용	만원
색 상	[]무채색 []유채색	[]전체도색 []색상변경	만원
주요옵션	[]있음 []없음	[]썬루프 []내비게이션 []기타	만원
리콜대상	[]해당없음 []해당	리콜이행 []이행 []미이행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상태표시 부호 : X (교환), W (판금 또는 용접), C (부식), A (흠집), U (요철), T (손상)			
※ 하단 항목은 승용차 기준이며, 기타 자동차는 승용차에 준하여 표시			
			
⑫ 사고이력(유의사항 4 참조)	[]없음 []있음	단순수리	[]없음 []있음
⑬ 교환,판금 등 이상 부위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외판부위	1랭크	[]1. 후드 []2. 프론트펜더 []3. 도어 []4. 트렁크 리드 []5. 라디에이터서포트(볼트체결부품)	만원
	2랭크	[]6. 쿼터패널(리어펜더) []7. 루프패널 []8. 사이드실패널	
주요골격	A랭크	[]9. 프론트패널 []10. 크로스멤버 []11. 인사이드패널 []17. 트렁크플로어 []18. 리어패널	
	B랭크	[]12. 사이드멤버 []13. 휠하우스 []14. 필러패널 ([]A, []B, []C) []19. 패키지트레이	
	C랭크	[]15. 대쉬패널 []16. 플로어패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종질지 80g/㎡]

62.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2/5쪽)

자동차 세부상태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⑭ 주요 장치	항목 / 해당부품	상 태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자기진단	원동기	[]양호 []불량	만원		
	변속기	[]양호 []불량			
원동기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만원		
	오일누유	실린더 커버(로커암 커버)		[]없음 []미세누유 []누유	
		실린더 헤드 / 개스킷		[]없음 []미세누유 []누유	
		실린더 블록 / 오일팬		[]없음 []미세누유 []누유	
	오일 유량	[]적정 []부족			
	냉각수 누수	실린더 헤드 / 개스킷		[]없음 []미세누수 []누수	
		워터펌프		[]없음 []미세누수 []누수	
		라디에이터		[]없음 []미세누수 []누수	
		냉각수 수량		[]적정 []부족	
	커먼레일	[]양호 []불량			
변속기	자동변속기 (A/T)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만원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수동변속기 (M/T)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기어변속장치	[]양호 []불량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	[]양호 []불량	만원		
	등속조인트	[]양호 []불량			
	추진축 및 베어링	[]양호 []불량			
	디퍼렌셜 기어	[]양호 []불량			

63.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3/5쪽)

조향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만원	
	작동상태	스티어링 펌프		[]양호 []불량
		스티어링 기어(MDPS포함)		[]양호 []불량
		스티어링조인트		[]양호 []불량
		파워고압호스		[]양호 []불량
		타이로드엔드 및 볼 조인트		[]양호 []불량
제동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만원	
	브레이크 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배력장치 상태	[]양호 []불량		
전기	발전기 출력	[]양호 []불량	만원	
	시동 모터	[]양호 []불량		
	와이퍼 모터 기능	[]양호 []불량		
	실내송풍 모터	[]양호 []불량		
	라디에이터 팬 모터	[]양호 []불량		
	윈도우 모터	[]양호 []불량		
고전원 전기장치	충전구 절연 상태	[]양호 []불량	만원	
	구동축전지 격리 상태	[]양호 []불량		
	고전원전기배선 상태 (접속단자, 피복, 보호기구)	[]양호 []불량		
연료	연료누출(LP가스포함)	[]없음 []있음	만원	

자동차 기타정보

(이 항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항 목				가격조사·산정액
수리필요	외장	[]양호 []불량	내장	[]양호 []불량	만원	
	광택	[]양호 []불량	룸 크리닝	[]양호 []불량		
	휠	[]양호 []불량	운전석	[]전 []후 / 동반석 []전 []후 / []응급		
	타이어	[]양호 []불량	운전석	[]전 []후 / 동반석 []전 []후 / []응급		
	유리	[]양호 []불량				
기본품목	보유상태	[]있음 []없음 ([]사용설명서 []안전삼각대 []잭 []스패너)				

최종 가격조사·산정 금액 만원

이 가격조사·산정가격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바탕으로 한 기준가격과
([]기술사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기준서를 적용하였음

⑮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성능·상태점검자	
	가격·조사산정자	

유의사항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1.
 - 자동차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 부분 제외)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 일, 보증거리는 ()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
 -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때 현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동 보증범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리콜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실매물 조회 및 정비이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 > 자동차 실매물검색 > 차량번호 입력
- 자동차365 > 자동차 이력조회 > 매매용차량조회 > 자동차등록번호 검색
2.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성능·상태점검자(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4. ㉔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성능·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6. 체크항목 판단기준(예시)
 - 미세누유(미세누수): 해당부위에 오일(냉각수)이 비치는 정도로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 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 부식: 차량하부와 외판의 금속표면이 화학반응에 의해 금속이 아닌 상태로 상실되어 가는 현상(단순히 녹슬어 있는 상태는 제외합니다)
 - 침수: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
 - 현재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 당시 해당 차량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를 기록하되, 기록한 주행거리가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주행거리(주행거리계 교체 정보 포함)보다 적은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이를 적어야 합니다.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7. 가격조사·산정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 부분 한정)에 적힌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 일, 보증거리는 ()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8. 매매업자는 매수인이 가격조사·산정을 원할 경우 가격조사·산정자가 해당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결과를 이 서식에 적도록 한 후,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업자는 가격조사·산정자에게 가격조사·산정을 의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가격조사·산정 비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9. 자동차가격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가격으로 조사·산정하되, 기준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사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가격과 기준서는 산정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행된 것을 적용합니다.
10. 특기사항란은 가격조사·산정자의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견해가 성능·상태점검자의 견해와 다를 경우 표시합니다.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이란

※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고차 가격의 적절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 가격조사·산정인이 객관적으로 제시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서비스이며, 가격조사·산정 결과는 중고차 가격판단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고 소비자의 구매여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65.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점검 장면 촬영 사진

(앞 면)

(뒷 면)

서명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중고자동차성능·상태를 점검, []자동차가격조사 · 산정)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인)
자동차가격조사 · 산정자	(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고지자	자동차매매업소 (인)

본인은 위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 · 산정 선택)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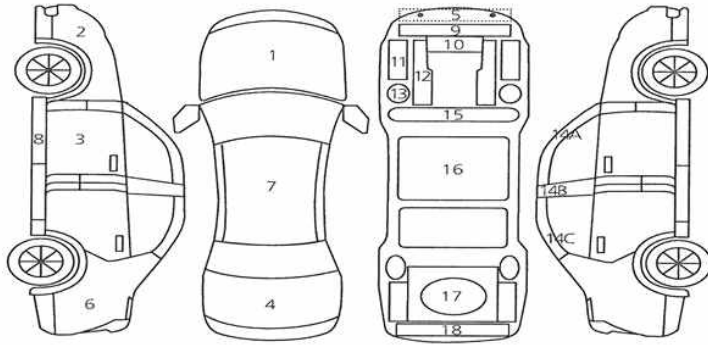
별첨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및 가격조사 산정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성능상태점검, 가격조사산정]

자동차 기본정보									
① 차명	(세부모델 :)				② 자동차등록번호				
③ 연식	④ 검사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최초등록일				⑦ 변속기 종류	[]자동 []수동 []세미오토				
⑥ 차대번호				[]무단변속기 []기타()					
⑧ 사용연료	[]가솔린 []디젤 []LPG []하이브리드 []기타								
⑨ 원동기형식	⑩ 보증유형		[]자가보증 []보험사보증		가격산정 기준가격				만원
자동차 종합상태									
⑪ 사용이력	상 태			항목 / 해당부품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양호 []불량 (□ 교환)			현재 주행거리 []					
	[]많음 []보통 []적음								
차대번호 표 기	[]양호 []부식 []훼손(오손) []상이 []변조(변타) []도말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흡기 □	배기 □	연료□	흡기 □	배기 □	연료□	흡기 □	배기 □	연료□
튜닝	[]없음 []있음								
	[]적법			[]불법(구조)			[]불법(장치)		
	□ 연료구조변경이력			□ 새시구조 □ 바디구조			□ 원동기 □ 주행 □ 제동 □ 연결 □ 승차 □ 적재 □ 차대/차체		
특별이력	[]없음 []있음								
	[]침수 [] 화재			□ 전손		□ 수리		□ 특수사용	
(□ 추정 □ 이력조회)			(□ 이력조회)		()		()		LPG, LNG 일반사용 (사용연수 년)
용도변경	[]없음 []있음			[]렌트 []리스 []영업용 []직수입					
색 상	[]무채색 []유채색			[]전체도색 []색상변경					
주요옵션	[]썬루프(□일반 □파노라마)			[]내비게이션			[]기타(비상키 분실)		
	[]있음 []없음 (□ 불량)			[]있음 []없음 (□ 불량)			[]있음 []없음 (□ 불량)		
기타 사양	전동시트(좌[] / 우[])								
	열선시트(앞[] / 뒤[])								
	에어백(1개() 2개() 4개() 6개() 8개() 10개() 12개() / 불량□)								
	HID □ 전동접미 미러□ 후방감지 센서□ EPS 핸들□ ECM 룸미러□ 가죽시트□ 메모리시트□ 통풍시트 □ ABS□ TCS□ 자동에어컨□ 스마트키□ CD체인저□								

67.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 ※ 상태표시부호
 X : 교환
 W : 용접
 ※ 수리필요
 S[흠집]
 M[요철]
 D[부식]
 T[손상]
- ※ 타 이 어
 규격{ }
 []스퍼 []템퍼 []SST

㉒ 사고이력 (유리/사할 4 참조)	[]없음 []있음		단순수리	[]없음 []있음
㉓ 부위별 이상여부 (하단참조)	외판부위 1랭크	[]없음 []있음		
	외판부위 2랭크	[]없음 []있음		
	주요골격	[]없음 []있음	[]A랭크 []B랭크 []C랭크	

㉔ 교환,판금 등 이상 부위

외판부위	1랭크	[] 1. 후드 [] 2. 프론트헨더 [] 3. 도어 [] 4. 트렁크 리드 [] 5. 라디에이터서포트(볼트체결부품)
	2랭크	[] 6. 쿼터패널(리어헨더) [] 7. 루프패널 [] 8. 사이드실패널
주요골격	A랭크	[] 9. 프론트패널 [] 10. 크로스멤버 [] 11. 인사이드패널 [] 17. 트렁크플로어 [] 18. 리어패널
	B랭크	[] 12. 사이드멤버 [] 13. 풀하우스 [] 14. 필러패널 ([]A, []B, []C) [] 19. 패키지지레이
	C랭크	[] 15. 대쉬패널 [] 16. 플로어패널

자동차 기타정보 (이 항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 · 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수리필요	외장	[]없음 []있음				
	내장	[]없음 []있음	☐씨트 ☐대시보드 ☐천장내부 ☐도어내부 ☐바닥내부			
	광택	[]없음 []있음				
	로트리닝	[]없음 []있음				
	휠	[]없음 []있음	불 량	운전좌()	운전우()	동반좌()
타이어	[]없음 []있음	불 량	운전좌()	운전우()	동반좌()	동반우()
		남은 홈 깊이	운전좌()	운전우()	동반좌()	동반우()
유리	[]없음 []있음					
기본품목	보유상태	[]없음 []있음 ([]사용설명서 []안전삼각대 []책 []스패너)				

68.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자동차 세부상태 (가격조사 · 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 · 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요 장치	항목 / 해당부품	상 태	세부상태
자기전단	원동기	[]양호 []불량	<input type="checkbox"/> 흡입공기유량센서 <input type="checkbox"/> 공전속도제오센서 <input type="checkbox"/> 냉각수온도센서 <input type="checkbox"/> 스로로틀 위치센서
	변속기	[]양호 []불량	<input type="checkbox"/> 인히터버 스위치 <input type="checkbox"/> 슬레노이드 밸브
원동기	작동상태(공회전)		<input type="checkbox"/> 엔진부조/과열 <input type="checkbox"/> 엔진이음/압축압력(배기 백색)
	오일누유	로커업 커버	[]없음 []미세누유 []누유
		실린더 헤드 / 가스켓	[]없음 []미세누유 []누유
		오일팬	[]없음 []미세누유 []누유
	오일 유량	[]적정 []부족	
	냉각수누 수	실린더 헤드 / 가스켓	[]없음 []미세누수 []누수
		워터펌프	[]없음 []미세누수 []누수
		라디에이터	[]없음 []미세누수 []누수
		냉각수 수량	[]적정 []부족
	고압펌프(커먼레일) - 디젤엔진		[]양호 []불량
변속기	자동변속 기 (A/T)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수동변속 기 (M/T)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기어변속장치	[]양호 []불량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	[]양호 []불량	
	동축조인트	[]양호 []불량	
	추진축 및 베어링	[]양호 []불량	
조향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input type="checkbox"/> 스티어일기어 <input type="checkbox"/> 스티어링 펌프
	작동상태	스티어링 기어	[]양호 []불량
		스티어링 펌프	[]양호 []불량
		타이로드엔드 및 볼 조인트	[]양호 []불량
제동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브레이크 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배력장치 상태		[]양호 []불량
전기	발전기 출력		[]양호 []불량
	시동 모터		[]양호 []불량
	와이퍼 모터 기능		[]양호 []불량
	실내 송풍 모터		[]양호 []불량
	라디에이터 팬 모터		[]양호 []불량
	윈도우 모터		[]양호 []불량
기타	연료누출(LP가스포함)	[]없음 []있음	
특이사항 (메 모)			
작 성 / 발 급 일 : 2018. . .			
작성자	성능상태점검자 : 가격조사산정자 :		

가격조사산정기준위원회

위원장 이 상 호

부위원장 김 길 겸

위원 주 경 이

위원 이 승 범

위원 조 태 신

위원 최 범 락

위원 김 영 중

간사 김 상 언